

「2025년 K-Health 대구 AI 의료생태계 구축 지원사업」 2025년 사용적합성 평가 및 국내외 현장실증 지원

I 지원개요

- 지원기관 : 대구테크노파크
- 지원내용

지원사업명	지원내용	지원규모	지원금	기업부담금	비고
사용적합성 평가 및 국내외 현장실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■ 국내외 현장실증 지원 	예산 범위 내 지원	50백만원/건 이내	총사업비의 10% 이상 현금 부담 필수	부가세 미지원

○ 공고/접수/지원기간

- 공고기간 : 2025. 5. 2.(금) ~ 5. 23.(금), 16:00까지
- 접수기간 : 2025. 5. 2.(금) ~ 5. 23.(금), 16:00까지
-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5. 10. 31.(금)까지

※ 공고 및 접수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II 지원 세부내용

구분	사용적합성 평가지원	국내외 현장실증 지원
지원 대상	데이터 입력, 분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의료·헬스 관련 제품* 및 서비스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* 디지털의료기기,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 기기/SW 등 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기업, ② 대구광역시 내 본사 및 지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기업, ③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과 실증 예정인 기업, ④ K-Health 대구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「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」 활용 확약 기업	
지원 내용	① 의도된 사용(모의)환경에서의 사용자 대상 제품 서비스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, 시험평가, 평가 자문 등 전주기 지원 ② 평가결과 보고서 및 사용적합성 설계(Usability Engineering) 등 지원	① 실환경 운용성 평가를 통한 시장 판로개척 지원 - 의료·헬스 제품/서비스의 실사용 환경, 수요처 연계 국내외 실증 지원 - 제품/서비스의 실환경 운용성 평가를 통해 수요처 요구사항 파악하여 제품고도화 - 제품/서비스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용실적 확보 지원 ② 안전성·유효성 확보 지원 - 다양한 환경이 반영된 실사용증거(RWE),

		<p>실사용데이터(RWD) 확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</p>
<p>세부 지원 사항 및 유의 사항</p>	<p>① 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<시험평가 착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행 전 관련 제도(IRB, 개인정보보호법 등) 검토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지원 - 시험평가 전, 평가 대상 제품(서비스)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제품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(데이터 확보, 데이터 활용 학습, 성능평가 등) <p><시험평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 프로토콜 개발 및 계획, 평가 수행 관련 수수료, 연구개발 서비스비, 전문가활용비 등 - 피험자(참여자) 보상비 - 시험평가 모의 환경 구축을 위한 장비 시설 사용 임차비 - 평가 결과 보고서, 사용적합성 설계(Usability Engineering) 파일 작성 등 관련 수수료, 연구개발 서비스 비용, 전문가 활용비 등 - 사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(평가에 필요한 최소 수량 지원, 평가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사용 가능) * 추후 최종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불인정 시 환수될 수 있음 -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 지원 불가(필요시 기업 민간부담금으로 집행 가능) <p>② 관련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 적합성 평가는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거나 신청기업이 시험평가 기관(기업) 선정 및 계약체결 통해 수행 가능 - 기업에서 직접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시험평가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-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대구테크노파크 전문가 수당지급 지침을 준용하여 산정 	<p>① 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<현장 실증 착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행 전 관련 제도(IRB, 개인정보보호법 등) 검토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지원 - 실증 전, 평가 대상 제품(서비스)의 개발 및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제품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(데이터 확보, 데이터 활용 학습, 성능평가 등) - 현장 실증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(책임보험 등) 방안 마련 및 관련 비용 <p><현장실증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실증 수요처 내 제품 또는 서비스 설치/운영, 참여자 모집 관련 홍보 등 관련 비용 -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는 지원 불가(기업 민간 부담금으로 집행 가능) - 실증에 사용되는 실증 제품 및 서비스는 수혜 기업에서 현물로 출자 원칙이나 실증과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추가 제작 필요시,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 관련 비용(실증에 따른 UI 고도화 등) 지원 가능 * 추후 최종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실증과의 연관성이 낮은 경우 불인정 및 환수될 수 있음 - 또한, 신청기업이 구매 확약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, 수요처 실증 후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확보를 위해서 필요로 한 관련 비용은 선정평가에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* 추후 최종평가위원회 검토 결과, 구매 확약 수요처의 요구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불인정 시 환수될 수 있음(반드시 실증 후 사업 기간 내에 고도화 결과물 획득이 가능할 것) - 실증 결과 분석, 실증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, 연구개발 서비스비, 수수료 등 관련 비용 <p>② 관련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국내외 현장 실증처 또는 수요처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'실증 지원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하며, '실증 후 구매확약서' 제출 시 가점 적용 - 현장 실증 전, 실증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

		<p>대한 손해배상(책임보험 등) 방안 마련 후 실증 수행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 실증에 있어 관련 제도 준수, 현행 제도 내 시행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수 -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대구테크노파크 전문가 수당지급 지침을 준용하여 산정 																								
<p>지원 방법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①</td> <td>공고 및 신청접수 (5월)</td> <td>신청기업 → 대구TP</td> </tr> <tr> <td>②</td> <td>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결과통보 (~6월 중)</td> <td>내·외부 전문가 지원기관(대구TP) → 선정기업</td> </tr> <tr> <td>③</td> <td>협약체결 (~6월 중)</td> <td>대구TP ↔ 선정기업</td> </tr> <tr> <td>④</td> <td>1차 사업비 지급(선금)</td> <td>대구TP → 선정기업</td> </tr> <tr> <td>⑤</td> <td>중간 점검(8월)</td> <td>대구TP ↔ 선정기업</td> </tr> <tr> <td>⑥</td> <td>2차 사업비 지급(잔금)</td> <td>대구TP → 선정기업</td> </tr> <tr> <td>⑦</td> <td>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, 최종평가 (10월)</td> <td>선정기업 → 대구TP</td> </tr> <tr> <td>⑧</td> <td>사업비 정산 및 정산금 반납 (11월)</td> <td>대구TP ↔ 선정기업</td> </tr> </table> <p>※ 선정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필요시 1차, 2차 사업비 지급 시 나누어 집행 가능 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</p>	①	공고 및 신청접수 (5월)	신청기업 → 대구TP	②	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결과통보 (~6월 중)	내·외부 전문가 지원기관(대구TP) → 선정기업	③	협약체결 (~6월 중)	대구TP ↔ 선정기업	④	1차 사업비 지급(선금)	대구TP → 선정기업	⑤	중간 점검(8월)	대구TP ↔ 선정기업	⑥	2차 사업비 지급(잔금)	대구TP → 선정기업	⑦	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, 최종평가 (10월)	선정기업 → 대구TP	⑧	사업비 정산 및 정산금 반납 (11월)	대구TP ↔ 선정기업	
①	공고 및 신청접수 (5월)	신청기업 → 대구TP																								
②	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결과통보 (~6월 중)	내·외부 전문가 지원기관(대구TP) →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③	협약체결 (~6월 중)	대구TP ↔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④	1차 사업비 지급(선금)	대구TP →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⑤	중간 점검(8월)	대구TP ↔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⑥	2차 사업비 지급(잔금)	대구TP →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⑦	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, 최종평가 (10월)	선정기업 → 대구TP																								
⑧	사업비 정산 및 정산금 반납 (11월)	대구TP ↔ 선정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
<p>지원 사업비 지급 절차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 및 선정(협약체결) ② 1차 사업비 선지급금 요청 및 관련 자료(증빙) 제출 ③ 지원기관(대구TP) 검토 및 사업비 지급(대구TP -> 선정기업) ④ 사업수행(선정기업- 공급기관/기업) ⑤ 중간점검(사업비 집행 실적, 사업 추진 현황 등) ⑥ 2차 사업비(지원금 사업비 잔금) 요청 및 관련 자료(증빙) 제출 ⑦ 지원기관(대구TP) 검토 및 사업비 지급(대구TP -> 선정기업) ⑧ 결과보고서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최종 평가 자료 제출 ⑨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※ 최종평가 결과 부적절한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기타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지급 요청 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- 사업비 지출 및 정산을 위한 별도 신규 계좌 개설 및 사용 - 선정기업(지원받는 기업)은 공급기관/기업과 직접 계약체결하에 구매, 용역,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고 지원기관은 선정기업의 요청과 수혜기업 지원 협약에 의거하여 지원금 사업비 지급 - 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회계 검토 예정 - 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부적정 판정 시, 기 지급된 지원금 사업비의 환수조치 																									

III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

○ 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로 이메일(minlee0210@dgtp.or.kr) 제출
- 제출 서류

지원 프로그램	세부 프로그램	제출서류
사용적합성 평가 및 국내외 현장실증 지원	사용적합성 평가지원	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한글파일 및 pdf 각 1부 2.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부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. 기업부담금 협약서 5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6. 견적서 1부 ※ 기타 제출 서류는 별도 공지 및 안내
	국내외 현장실증 지원	1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한글파일 및 pdf 각 1부 2.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부 3. 개인 및 기업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. 기업부담금 협약서 5. 실증지원협약서 1부 6. 실증 후 구매협약서 1부(해당시 제출) 7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8. 견적서 1부 ※ 기타 제출 서류는 별도 공지 및 안내

○ 지원기업 선정기준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(20)	- 기업의 전문성, 매출 현황, 마케팅 및 사업화 계획 등	10
	-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	10
지원 필요성(20)	- 사업 목표의 명확성	10
	-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	10
사업수행의 적정성(30)	- 추진 방법의 구체성	10
	- 추진 내용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	10
	- 신청 예산의 적절성	10
성과 및 기대효과(30)	- 성과물 활용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	10
	- 향후 기대효과를 통한 기업성장 가능성	10
	- 지속적인 시장수요 창출 가능성	10
합 계		100
우대사항	- 현장실증 지원의 경우 구매협약서 제출시 가산점 부여	5
	- K-Health 국내외 시장진출 사업화 역량 컨설팅 지원('24년 11월) 수행 기업	5
총 계		110

IV 문의처

- 대구테크노파크 이민 선임연구원(053-602-1815 / minlee0210@dgtp.or.kr)